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의무 미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함안군

내 용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한 이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질관리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¹⁷⁴⁾을 지정할 수 있으며¹⁷⁵⁾

174)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에 따라,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호소수의 경우는 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는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는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지정한다.

175) (제1항 예외)다만, 제1호에 따른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2호에 따른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3호에 따른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같은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창원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의무 미이행

창원시 ○○○○과는 ○○취수장(시설용량 440,000톤/일), ○○취수장(시설용량 11,000톤/일), ○○취수장(시설용량 137,000톤/일) 등 3개 취수장을 운영하면서, ○○취수장의 경우에는 낙동강 하천수를 수원으로, ○○취수장과 ○○취수장의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를 수원으로 취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규모 집단민원 등을 우려하여 취수장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았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라 ○○취수장은 유하거리 4km에 해당하는 11,027,510㎡의 면적을, ○○취수장은 유하거리 2km에 해당하는 15,188,616㎡의 면적을, ○○취수장은 유하거리 2km에 해당하는 9,073,020㎡의 면적을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하며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제4호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수도법」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립,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른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수장, ○○취수장, ○○취수장 등 3개 취수장에 대하여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 판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의무를 미이행 함으로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수원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하였다.

2. 함안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의무 미이행

함안군 ○○○○사업소는 ○○취수장(시설용량 700톤/일), ○○취수장(시설용량 980톤/일), ○○취수장(시설용량 22,000톤/일) 등 3개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류지에서 취수하는 ○○취수장은 2,1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9. 11. 29.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소류지에서 취수하는 ○○취수장은 1,829㎡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88. 10. 29.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시설용량 22,000톤/일)의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았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취수장에서 유하거리 2km지역을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도지사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은 이후에는 「수도법」 제8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수립,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른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수장에 대하여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 판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의무를 미이행 함으로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절차 및 감사시 지적사항>

법령에 따른 올바른 절차	잘못된 행정	감사시 지적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지정신청 「상수원관리규칙」 제5조 ↓ (시도지사)타당성검토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 (시도지사)보호구역지정고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78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 (시군구)보호구역의 관리 「수도법」 제8조 ↓ (시군구)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 계획 수립시행 「수도법」 제8조의2 ↓ (시군구)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미신청 (시군구)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 등과 관 련한 법령 이행 회피 가능	①상수원보호구역지정 신청권자인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 및 지정결정권한 침해 ■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 「수도법」 제7조 ■ 「수도법」 제78조 ②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수질관리 계획 수립,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 ■ 「수도법」 제8조 ■ 「수도법」 제8조의2 ■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 함안군수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 받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